

2026. 9. 7.(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393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보고안

< 여성가족국 보고안(4건) 목록 >

1. 경기도 젠더폭력 통합대응단 운영 사무의 공기관 위탁 보고 1
2. 경기아이사랑 부모학교 운영 사무의 공기관 위탁 보고 8
3. 아이돌봄사 역량강화 교육 사무의 공기관 위탁 보고 13
4. 경기도 아동그룹홈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18

여성가족국

경기도 젠더폭력통합대응단 운영 사무의 공기관 위탁 보고

1. 보고이유

- 가. ‘경기도 젠더폭력통합대응단 운영’ 사무를 2024. 1. ~ 2026. 12.(3년간) 공기관 위탁 사업으로 추진하여 2026년 12월 31일 위탁 만료예정임
- 나. 젠더폭력 피해 지원 및 예방 업무를 하는 ‘경기도 젠더폭력통합대응단 운영’ 사무를 전문 역량을 갖춘 기관에 공기관위탁 운영하고자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 제7조(도의회 동의)에 따라 사무의 위탁(재위탁)을 의회에 보고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탁사무명 : 경기도 젠더폭력통합대응단 운영
- 나. 사업 추진 연혁

구분	위탁기간	수탁기관	도의회 보고/동의	비고
1	'24. 1. ~ '26. 12.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비대상	

다. 위탁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 「경기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
- 「경기도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7~8조
-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7조, 제10조
- 「경기도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4~6조
- 「경기도 여성폭력·가정폭력 공동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조례」 제3조, 제5~6조

○ 필요성

- 경기도 여성가족재단(이하 ‘재단’)은 젠더폭력 연구와 현장 지원 경험, 전문인력을 갖춘 전문기관임
- 경기도 젠더폭력통합대응단 운영은 젠더폭력 피해 통합지원, 예방교육·홍보, 다기관 협력체계 강화 등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연속성이 요구됨
- 사업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경기도 젠더폭력 대응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전문기관인 재단에 위탁하는 것은 적절함

라. 위탁사무 내용 및 예산

○ 주요 사무 : 경기도 젠더폭력통합대응단 운영

- 젠더폭력 피해자에 대한 통합서비스 제공(상담·법률·의료·주거 등)
- 사각지대 피해자 지원(신종폭력, 법·제도 미비 피해자 등 긴급지원)
- 젠더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 인식개선 사업
-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운영지원
- 시군 가정폭력, 성폭력 등 바로희망팀 업무 지원 등

○ 소요예산(안) : 6,312,017천원(국비 324,761, 도비 5,987,256) ※ '27년 본예산 심의에 따라 변경 가능

마. 위탁시설 개요

○ 기 관 명 : 경기도여성가족재단

○ 소 재 지 : 경기도 이천시 증신로153번길 13

※ 대응단은 경기여성비전센터 3층(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308번길 34)에 위치

○ 설립형태 :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 설립근거 :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7조

○ 기관규모 : 75명 ※ 대응단 '26년 현재 정원 105명

바. 위탁예정 기간 : 2027. 1. 1. ~ 2029. 12. 31. (3년)

사. 수탁자 선정방식 : 공기관 위탁(경기도여성가족재단)

아. 공기관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 적정(제3차, 기획담당관-5639(2026.5.22.))

3. 참고사항

가. 성과보고서 : 붙임 1

나. 사업계획(안) : 붙임 2

다. 관련법령 : 붙임 3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 운영 성과평가 결과보고**□ 개 요**

- 위탁사무명 : 경기도 젠더폭력통합대응 운영
- 수탁기관 : 경기도여성가족재단
- 위탁기간 : 2024. 1. 1. ~ 2026. 12. 31.
- 위탁비용 : ('26년) 6,312,017천원 / ('25년) 4,561,229천원 / ('24년) 4,416,612천원

□ 성과목표

- 폭력 피해자에 대한 통합 서비스(상담·법률·의료·주거 등) 원스톱 지원
- 폭력 예방문화 확산을 통한 도민 인식 제고
- 서비스 전문성·공공성 강화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 추진실적('24년~'26년 7월말 기준)

- 젠더폭력 피해자 96,256명에 상담·법률·의료·주거 등 서비스 181,518건 지원
- 변호사 58명, 심리상담사 27명, 통번역 33명, 의료인 51명 총 피해지원단 169명 구성 등

□ 평가의견

- 젠더폭력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일상회복 지원을 위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피해자 보호·지원, 인식개선·홍보사업 등 수탁업무를 계획대로 수행중임
- 사업추진, 인력관리, 예산관리 등 전반적으로 양호함

□ 개선과제

- AI 등 기술 발전과 사회환경 변화, 다양화되는 폭력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원체계 고도화 및 사각지대 해소 필요

□ **추진배경**

- AI 등 기술 발전과 사회환경 변화, 다양화되는 폭력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젠더폭력* 피해 지원체계 고도화 및 사각지대 해소 필요

* (젠더폭력) 디지털성범죄, 스토킹, 교제폭력, 아동·청소년 성착취, 가정폭력, 성폭력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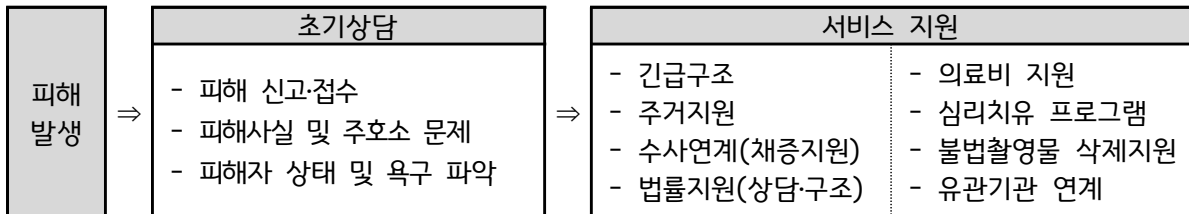
□ **사업개요**

- (개 소 일) 2024. 4. 30. / 젠더폭력 대응 및 피해 지원 컨트롤타워 구축
- (운영근거) 경기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
- (운영기관) 경기도여성가족재단(공기관위탁)
- (사업위치) 수원시(남부) / 의정부시(북부)
- (총사업비) 9,076,539천원(국비 1,351,623, 도비 7,724,916)

※ '27년 본예산 심의에 따라 변경 가능, 1366센터 예산 포함 대응단 전체 예산

□ **주요사업**

- 젠더폭력 피해자에 대한 통합 서비스(상담·법률·의료·주거 등) 원스톱 지원



- 경찰, 교육청, 피해자 지원기관, 민간단체 등 협력체계 구축
- 사각지대 피해자 초기 대응체계 구축(신종폭력, 법·제도 사각지대 등)

□ **그간 추진현황**

- 젠더폭력 피해자 96,256명에 상담·법률·의료·주거 등 서비스 181,518건 지원

□ **기대효과**

- 신속하고 체계적인 통합 대응으로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 경기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여성폭력 통합대응기관) ① 도지사는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경기도 여성폭력 통합대응기관(이하 “대응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대응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1.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의 통합 운영
2. 여성폭력 인식개선사업
3. 여성폭력 대응정책 개발
4.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운영지원
5. 여성폭력 재범방지를 위한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도지사는 대응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0조제2항의 각 호의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경기도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스토킹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이하 ‘스토킹 등’이라 한다)를 예방하고 피해자나 그 가족구성원 및 주변인(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사업) ① 도지사는 스토킹 등의 예방 및 피해자 등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스토킹 등의 실태조사, 피해예방 및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2. 스토킹 등의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
3. 피해자 등의 심리상담 지원사업
4. 피해자 등의 법률 지원사업
5. 피해자 등의 보호 및 지원사업을 위한 경찰청 등 공공기관과 피해자보호단체 등 민간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스토킹 등의 예방 및 피해자 등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탁) ① 도지사는 제7조제1항 각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사업) ① 도지사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경찰,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상시 신고체계 마련
2.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심리치료 지원 및 연계
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
5. 디지털성범죄 2차 피해 방지 및 인식 개선
6.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① 도지사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피해 접수 및 상담 지원
2. 디지털성범죄 영상 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
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의료지원 및 사회적 자원 연계
5. 디지털성범죄 관련 전문인력 양성
6.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 지원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경기도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등) ① 도지사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피해자 대상 상담·의료·법률·교육·자립지원 및 사례관리
2. 피해자의 긴급구조 및 일시보호
3.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 관계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상담
4.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에 대한 신고접수 및 상담
5. 아동·청소년 성착취 등에 관한 조사·연구, 예방교육
6.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를 위한 홍보, 캠페인 등 인식개선

7. 그 밖에 도지사가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도지사는 제2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지원을 연장할 수 있다.
1. 피해자가 희망하는 경우 2년의 범위에서 한차례 연장 가능
 2. 피해자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지적장애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 별표에 따른 지적장애, 정서·행동 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경기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계선 지능인에 해당하는 경우 24세까지 연장 가능
- ③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효율적인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제5조제1항에 규정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경기도 여성폭력·가정폭력 공동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조례

제3조(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종합적인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한 공동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한다.

② 도지사는 공동대응체계 구축·운영을 위해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한다.

제5조(공동대응체계의 기능) 공동대응체계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자 조기발견 및 초기개입 시스템 구축
2. 피해자 보호 및 회복을 위한 전문기관 연계 및 복지서비스 지원
3. 2차 피해 발생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4. 여성폭력·가정폭력 통합사례 관리
5. 여성폭력·가정폭력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교육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임 및 위탁) ① 도지사는 공동대응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관련 기관·단체 등에게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경기아이사랑 부모학교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보고

1. 보고이유

- 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제1조(목적) 및 「경기도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사업), 제11조(권한의 위탁)에 따라 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위탁기관에 해당
- 나.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 제7조(도의회 동의)에 의거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사무의 위탁(재위탁)을 경기도 의회에 보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경기아이사랑 부모학교 운영

나. 사업 추진 연혁

구분	위탁기간	수탁기관	도의회 보고/동의	비고
1	'22. 2. ~ '22. 12.	경기도여성가족재단	'21. 11. 동의	
2	'23. 3. ~ '23. 12.	경기도여성가족재단	'22. 11. 동의	
3	'24. 2. ~ '24. 12.	경기도여성가족재단	'23. 11. 동의	
4	'25. 2. ~ '26. 12.	경기도여성가족재단	'24. 11. 동의	

다. 위탁추진 근거

- 「경기도 가정교육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 제5조(책무)
- 「경기도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5조(사업), 제11조(권한의 위탁)

라. 위탁 추진 필요성

- 맞춤형 부모상담 및 대상자 맞춤 교육 지원을 위해 경기도 지역실정에 적합한 가족정책을 개발하고 가족의 기능강화와 성평등한 사회구현을 위해 설립된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의 사업추진 경험과 전문성 활용한 사업수행 가능

마. 위탁사무 내용

- 맞춤형 1:1 양육 상담, 대상자 맞춤 양육교육, 도민 특강 등 운영·지원

바. 소요예산(안) : 100,000천원(도비 100%) ※ '27년 본예산 심의에 따라 변경 가능

구 분	예산액(백만원)	세부내용
계	100	
상담운영비	39	- 상담료, 검사도구, 홍보비 등
교육운영비	12.8	- 대상자 맞춤형육육교육(강의료, 원고료 등), 특강 운영비(특강료, 교육 운영비 등)
기타운영비	3	- 온라인 플랫폼(ZOOM)계정 구입(비대면 상담 등), 기타 운영비 등
인건비	43.2	- 사업인력 1명×12개월
위탁수수료	2	- 위탁수수료(2%)

사. 위탁시설 개요

- 기 관 명 : 경기도여성가족재단
- 소 재 지 : 경기도 이천시 증신로153번길 13
- 설립형태 :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 설립근거 :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7조
- 기관규모 : 75명

아. 위탁예정 기간 : 2027. 01. 01. ~ 2029. 12. 31.(3년)

※ 前 계약기간 : '25. 2. 21. ~ '26. 12. 31.(2년)

자. 수탁자 선정방식 : 공기관 위탁(경기도여성가족재단)

차. 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 적정(제4차, 기획담당관-8740(2026.8.3.))

3. 참고사항

가. 성과보고서 : 붙임1

나. 경기아이사랑 부모학교 추진 계획(안) : 붙임2

다. 관계법령 : 붙임3

경기아이사랑부모학교 공공기관 위탁 성과평가 결과보고

□ 개 요

- 위탁사무명 : 경기아이사랑 부모학교 운영
- 위탁기관 : 경기도 여성가족재단
- 추진기간 : 2026. 2. ~ 2026. 12. 31. ※ 위탁기간 : '25. 2. 21. ~ '26. 12. 31.(2년)
- 위탁비용 : 100,000천원(도비 100%)

□ 성과목표

- 자녀 발달, 양육 갈등, 양육 스트레스 등 양육 전반에 관한 1:1 양육상담 제공(380회)
- 양육 상황(맞벌이, 한부모 등)과 자녀연령(영·유아~청소년) 등을 고려한 주제별 맞춤형 양육 교육 운영(4회)
- 양육·가족 분야 주요 사회적 이슈를 반영한 도민 특강(1회)

□ 추진실적('26. 7월 기준)

- 현 실적 : 1:1 양육상담(185회), 홍보(홈페이지, sns 등)
 - ※ 도민특강 : 9월~10월 중 / 교육 : 8월~9월(2회), 10월(2회)
- 추정 실적(위탁기간 만료시)
 - 1:1 양육상담(380회), 대상자 맞춤 교육(4회), 도민특강(1회)
- 목표달성 가능여부(위탁기간 만료시) : 가능 (O)

□ 평가의견

- 취약·위기 양육자 발굴을 위한 유관기관 연계 확대
 - 실질 상담이 필요한 취약·위기 양육자 발굴을 확대하기 위한 유관기관 연계·협력 확대로 정책의 실효성 증가
- 양육 가족 분야 사회적 이슈를 반영한 도민 특강 운영
 - 사회적 환경 변화와 양육 관련 이슈에 대한 시의성 있는 전문가 특강 운영

□ 개선과제

- 가족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시·군 부모교육 기관과 연계 추진
- 상담 대상자 다양성, 균형성(남녀 비율, 연령대 등) 고려 모집 및 부모 교육 참여 인원 확대

□ 추진배경

- 가족 형태의 다변화 및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건강한 가족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상담, 교육,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7년 2월 ~ 12월
- 사업비 : 100,000천원(도비 100%) ※ '27년 본예산 심의에 따라 변경 가능
- 사업대상 : 시·군 유관기관*을 통해 상담을 신청한 취약가족 양육자
 - * 시군 가족센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단기청소년쉼터, 자활지역센터, 경기도이주여성상담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입양홍보회, 드림스타트 등 위기·취약가족 대상 서비스 제공기관
- 사업내용 : 1:1 양육상담(400회), 대상자 맞춤 양육교육(4회), 도민 특강(1회)
 - 1:1 양육 상담(400회) : 가족 형태 다양성을 반영한 1:1 맞춤형 양육상담을 통한 양육 어려움 완화 및 취약·위기 상황에 대한 심리적 지원 강화
 - 대상자 맞춤 양육교육(4회) : 양육자의 양육 상황과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양육 역량 강화 및 건강한 양육 환경 조성
 - 도민 특강(1회) : 사회적 환경 변화와 양육 관련 이슈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전문가 특강을 통한 양육자의 역할 인식 및 대응 역량 강화
 - 부모 교육, 남성 교육 사업* 추진기관 간 협력하여 도민행사(특강, 체험, 홍보·캠페인 등) 추진
 - * 부모학교(교육, 상담), 100인의 아빠단(미션, 체험), 시·군 가족센터 등
 - ※ 협력기관 :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지회, 시·군 가족센터 등
 - 홍보(콘텐츠 활용) : 홍보 콘텐츠 활용을 통한 사업 전반에 대한 도민 인지도 제고 및 상담·교육 등 주요 프로그램 참여 유도
 - ※ 홍보영상, sns 등 온라인 채널 활용

□ 기대효과

- 맞춤형 부모상담 및 교육 제공으로 부모-자녀 관계 증진
- 자발적인 부모교육 참여를 통해 바람직한 자녀양육 및 가족문화 형성
- 부모 양육과 관련된 명사특강, 홍보 등 행사를 통해 가족 친화 문화 확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출자·출연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8. 그 밖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사.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경기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사업) 여성가족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여성, 가족, 보육, 저출생 및 아동·청소년정책(이하 “여성정책 등”이라 한다) 연구개발
2. 성(性) 인지적 정책실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제11조(권한의 위탁) 도지사는 여성가족재단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 공공 시설의 관리 및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계 조례나 법령에 따라 여성가족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경기도 가정교육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

제5조(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모든 도민에게 충분하고 적합한 형태의 부모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시·군, 학교, 도민 간에 상호 협력체계를 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아이돌봄사 역량강화 교육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보고

1. 보고이유

- 가. 「경기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제5조(지원사업) 및 제7조(위임·위탁)에 따라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에 위탁한 사무에 해당
- 나.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 제7조(도의회 동의)에 의거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사무의 위탁(재위탁)을 경기도 의회에 보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아이돌봄사 역량강화 교육

나. 사업 추진 연혁

구분	위탁기간	수탁기관	도의회 보고/동의	비고
1	'26. 1. ~ '26. 12.	경기도여성가족재단	'25. 12. 동의	

다. 위탁추진 근거

- 「경기도 아이돌봄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권리보장에 관한 조례」 제8조(지원사업)
- 「경기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제5조(지원사업) 및 제7조(위임·위탁)

라. 위탁 추진 필요성

-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경기도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를 수탁 운영하고 있어 아이돌봄 전문인력과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사업 수행 가능

마. 위탁사무 내용

- 영·유아 놀이콘텐츠 개발자료를 활용한 돌봄 역량강화 교육
- 교육과정 교수법 공유를 위한 교육강사 워크숍 실시

바. 소요예산(안) : 75,000천원(도비 100%) ※ '27년 본예산 심의에 따라 변경 가능

- 워크숍 운영비 1,000원 x 3회 = 3,000천원
- 교재교구비 60,500원 x 1,000명 = 60,500천원
- 택배비 등 운영비 10,000천원
- 위탁수수료 1,500천원

사. 위탁시설 개요

- 기 관 명 : 경기도여성가족재단
- 소 재 지 : 경기도 이천시 증신로153번길 13
- 설립형태 :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 설립근거 :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7조
- 기관규모 : 75명

아. 위탁예정 기간 : 2027. 01. 01. ~ 2027. 12. 31.(1년)

※ 前 계약기간 : '26. 1. 1. ~ '26. 12. 31.(1년)

자. 수탁자 선정방식 : 공기관 위탁(경기도여성가족재단)

차. 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 적정(제4차, 기획담당관-11349(2026.8.3.))

3. 참고사항

가. 성과보고서 : 붙임1

나. 아이돌봄사 역량강화 교육 추진계획(안) : 붙임2

다. 관계법령 : 붙임3

아이돌봄사 역량강화 교육 공기관 위탁 성과평가 결과보고

□ 개 요

- 위탁사무명 : 아이돌봄사 역량강화 교육
- 수탁기관 : 경기도여성가족재단
- 위탁기간 : 2026. 1. ~ 2026. 12.
- 위탁비용 : 75,000천원(도비 100%)

□ 성과목표

- 아이돌봄사 역량강화 교육 실시 1,000명/35회

□ 추진실적

- 현 실적('26. 7월말 기준)
 - 아이돌봄사 역량강화 교육 실시 875명/24회
- 추정 실적(위탁기간 만료시)
 - 아이돌봄사 역량강화 교육 실시 1,000명/35회
- 목표달성 가능여부(위탁기간 만료시) : 가능

□ 평가의견

- 매회 모니터링 및 교육생 사전·사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교육 운영 내실화를 위해 노력함. 만족도 조사 결과, 특히 현장 활용도 항목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임.

□ 개선과제

-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 결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후 교육 운영 계획에 환류하여 지속적인 교육 품질 개선이 필요함.
- 높은 현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강화 교육 확대 추진 검토

□ 사업개요

- 수탁기관 : 경기도여성가족재단(공기관위탁대행)
- 사업기간 : 2027. 1. ~ 12월
- 주요업무 : 아이돌봄사 역량강화교육 「놀이 집 놀이」 운영
- 예 산 : 75,000천원(도비 100%) ※ '27년 본예산 심의에 따라 변경 가능

□ 사업계획

① 교육기관 강사 워크숍(3회)

- 대 상 : 도내 보수교육기관 소속 특화과정(영·유아기) 강사 20명
- 주요내용
 - 「놀이 집 놀이」 영·유아기 놀이콘텐츠 활용 교육
 - 「놀이 집 놀이」 안내서 활용 교육

② 아이돌봄사 역량강화 교육(35회)

- 대상 : 도내 아이돌봄사 보수교육 대상자 1,000명
- 주요내용
 - 아이돌봄사 보수교육* 내 특화과정(영·유아기) 활용
 - * 보수교육 강사로 등 서비스제공기관 운영비로 부담
 - 「놀이 집 놀이」 교재·교구 구입 및 배포
- 교육내용 : 놀이 콘텐츠를 활용한 영유·아 놀이 실제

□ 추진일정

구 분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획수립	●										
강사 워크숍		●				●				●	
교재·교구 구성	●	●									
운영 안내 및 홍보	●	●									
교육 운영			●	●	●	●	●	●	●	●	
교육 운영 점검			●	●	●	●	●	●	●	●	
사업 결과보고											●

「경기도 아이돌봄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권리보장에 관한 조례」

제8조(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아이돌봄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이돌봄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지원
 2. 아이돌봄종사자의 안전보장 및 근무환경 개선 사업
 3. 아이돌봄종사자에 대한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조사
 4. 아이돌봄종사자에 대한 법률 상담 및 상담 지원
 5. 아이돌봄종사자의 근무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적용 대상 및 선정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처우개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경기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제5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기도형 아이돌봄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한다.

1.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지원
 2.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 사업
 3. 시·군 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
 4. 아이돌봄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② 도지사는 지원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위임·위탁)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지원사업의 일부를 시·군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12.31.>

경기도 아동그룹홈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1. 보고이유

- 가.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18조(공동생활가정 지원센터) 및 제29조(업무의 위탁)에 따라 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위탁기관에 해당
- 나.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도의회 동의)에 의거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사무의 위탁(재위탁)을 경기도 의회에 보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경기도 아동그룹홈지원센터 운영

나. 최근 사업 추진 연혁

위탁기간	수탁기관	도의회 보고/동의	비고
'24. 4. ~ '26. 12.	(사)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23. 9. 동의	

다. 위탁추진 근거

-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18조(공동생활가정 지원센터) 및 제29조(업무의 위탁)

라. 위탁 추진 필요성

- 종사자 업무과중 및 지원 한계
 - 아동그룹홈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양육을 담당하고 있으나 시설당 4명의 적은 종사자로 24시간 돌봄, 식사, 행정, 상담 등 복합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세심한 개별지원에 한계가 있음
 - ※ ('26.6월 기준) 그룹홈 161개소, 종사자 613명, 아동 746명
-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통합지원체계 구축
 - 개별 그룹홈이 자체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문화·예술 프로그램,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 자립지원 등을 전담할 전문지원 조직 필요
- 행정효율성 및 서비스 질 제고
 - 아동복지 현장에 대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진 민간기관에 위탁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내 보호아동에게 보다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

마. 위탁사무 내용

사업내용	중점 추진과제
아동 성장·보호	■아동을 보호, 존중하며 안전한 생활을 위한 「교육지원」 ■정서적 안정감과 도전정신, 건문을 넓히는 「문화체험」 ■아동 심미적 감수성 향상 및 재능 표출을 위한 「예술지원」 ■상담을 통한 진로 설계 체험형 프로그램 「자립지원」
종사자 역량강화	■종사자의 직무 역량 발전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문성 강화 교육」 ■쉽과 휴식으로 소진 예방 및 사기 진작 「문화(휴식)지원」
그룹홈 공공성 강화	■그룹홈의 현안 및 효과적 운영을 위한 「정책 지원」 ■인식개선 및 협력 복지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한 「홍보 및 업무협약」
자원연계	■전략적 사업기획을 통한 자원발굴 및 후원사업 활성화 「자원 연계」

바. 소요예산(안) : 550,000천원(도비 100%) ※ '27년 본예산 심의에 따라 변경 가능

구 분	예산액(천원)	세부내용
계	550,000	
인건비	366,515	종사자 급여, 제수당 등
운영비	46,485	공공요금, 수용비, 차량비 등
사업비	137,000	아동성장보호지원, 종사자 역량강화 등

사. 위탁시설 개요

- 시설명 : 경기도아동그룹홈지원센터
- 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효원로 184, 502호
- 구성인원 : 7명

아. 위탁예정 기간 : 2027. 01. 01. ~ 2029. 12. 31.(3년)

자.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및 수탁기관 선정심의회 심의·선정

차. 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 적정 ※ 2026년 제4차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결과

3. 참고사항

가. 성과보고서 : 붙임1

나. 아동그룹홈지원센터 사업 추진계획(안) : 붙임1

다. 관계법령 : 붙임3

경기도아동그룹홈지원센터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보고

□ 개 요

- 위탁사무명 : 경기도아동그룹홈지원센터 운영
- 수탁기관 : (사)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 위탁기간 : 2024. 4. 1. ~ 2026. 12. 31.
- 위탁비용('26년) : 569,000천원(도비 100%)

□ 성과목표

- 아동성장보호 : 아동교육 20회, 문화체험 11회, 예술지원 1회, 자립지원 10회
- 종사자역량강화 : 직무교육 16회, 휴식(문화)지원 2회
- 그룹홈공공성강화 : 정책지원 6회

□ 추진실적('26.7월 기준)

- 현 실적
 - 아동성장보호 : 아동교육 7회, 문화체험 8회, 자립지원 4회
※(예술지원) 8월 예정
 - 종사자역량강화 : 직무교육 10회, 휴식(문화)지원 1회
 - 그룹홈공공성강화 : 정책지원 3회
- 추정실적(위탁기간 만료시)
 - 아동성장보호 : 아동교육 20회, 문화체험 11회, 예술지원 1회, 자립지원 10회
 - 종사자역량강화 : 직무교육 16회, 휴식(문화)지원 2회
 - 그룹홈공공성강화 : 정책지원 6회
- 목표달성 가능여부(위탁기간 만료시) : 가능

□ 평가의견

- 기관운영 및 목적에 맞는 사업추진 등 충실하게 사업 수행
- 그룹홈간 협력·연계 등 통합지원체계를 통한 아동보호서비스 질 제고에 노력함

□ 개선과제

- 그룹홈 아동의 연령(미취학·초·중·고) 및 종사자 연차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추진 필요

□ 사업개요

- 관련근거 :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18조
- 사업량 : 1개소
- 예산액 : 550,000천원(도 100%) ※ '27년 본예산 심의에 따라 변경 가능
- 운영방식 : 민간위탁

□ 사업내용

- 비전 :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질 높은 양육 환경 지원

사업내용	중점 추진과제
아동 성장·보호	■아동을 보호, 존중하며 안전한 생활을 위한 「교육지원」 ■정서적 안정감과 도전정신, 견문을 넓히는 「문화체험」 ■아동 심미적 감수성 향상 및 재능 표출을 위한 「예술지원」 ■상담을 통한 진로 설계 체험형 프로그램 「자립지원」
종사자 역량강화	■종사자의 직무 역량 발전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문성 강화 교육」 ■쉽고 휴식으로 소진 예방 및 사기 진작 「문화(휴식)지원」
그룹홈 공공성 강화	■그룹홈의 현안 및 효과적 운영을 위한 「정책 지원」 ■인식개선 및 협력 복지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한 「홍보 및 업무협약」
자원연계	■전략적 사업기획을 통한 자원발굴 및 후원사업 활성화 「자원 연계」

□ 기대효과

- 그룹홈 양육지원 강화, 종사자 역량강화 및 시설간 협력·연계 등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아동보호서비스 질 제고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4. 공동생활가정: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제55조(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교육훈련)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양성 및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9조(비용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수탁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18조(공동생활가정) 도지사는 법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이하 “그룹홈”이라 한다)의 활성화와 그룹홈 간의 협력·연계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 아동 그룹홈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9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8조부터 제18조까지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아동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할 경우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31조(비용의 지원) 도지사는 제8조부터 제18조까지 관련 사업과 그 밖에 아동복지 사업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기관 및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도의회 동의) ①~② 생략

③ 도지사는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사무를 다시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도의회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6년이 경과한 사무를 계속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6년 경과 후 첫 계약 시 다시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